

○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6월 7일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6월 16일(제3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관리국장 신강탁)

가. 제안이유

-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운영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(안 제3조),
- 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때에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중갑)

-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궐원이 발생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기한이 현행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, 신입생 학부모의 운영위원 배제 및 홍보상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고,
- 위원 결원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는 잔여임기가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어 짧은 임기로 인해 보궐선출 입후보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궐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잔여임기를 6월 미만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운영위원 결원시에는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8조 및 각급 학교의 「학교운영위원회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,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

제3조제2항중 “결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”를 삭제하고, 동항 단서 중 “잔여임기가 3월미만”을 “잔여임기가 6월미만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초·중등교육법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국가공무원법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</p>	<p>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초·중등교육법</u> 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 34조제 <u>항</u>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</p>
<p>제3조(위원의 선출등) ①(생략)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위원의 선출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,-----잔여 임기가 6월미만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위원의 자격)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<u>국가공무원법</u>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위원의 자격) ①----- ----- 「<u>국가공무원법</u>」 ----- -----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,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
제62조(조례 등에의 위임)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